## 공익신탁법 시행령

[시행 2015. 3. 19.] [대통령령 제26147호, 2015. 3. 17., 제정]

제1조(목적)

제2조(공익사업)

제3조(공익신탁의 인가 신청)

제4조(특수한 관계의 범위)

제5조(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 • 변경 절차)

제6조(변경인가 절차)

제7조(변경신고 사항)

제8조(신탁재산의 운용)

제9조(운용소득의 산정방법)

제10조(신탁사무의 위임)

제11조(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)

제12조(외부감사 기준)

제13조(합병인가 절차 등)

제14조(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)

제1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제1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제17조(서식)

## 공익신탁법 시행령

[시행 2015. 3. 19.] [대통령령 제26147호, 2015. 3. 17., 제정]

법무부 (상사법무과) 02-2110-3167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공익신탁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익사업) 「공익신탁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- 1. 국토의 합리적 이용,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2.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(財貨)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3.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사업 또는 제1호·제2호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제3조(공익신탁의 인가 신청)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신청인의 성명・주민등록번호・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, 법인등록번호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・주소)
- 2. 공익신탁의 명칭·신탁사무처리지(공익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를 말하며, 신탁사무처리지가 별도로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주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·목적사업·수익사업
- 3. 수탁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, 법인등록번호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주소)
- 4. 위탁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, 법인등록번호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주소)
- 5. 신탁관리인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, 법인등록번호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주소)
- 6. 신청 당시 신탁재산의 총액 및 신탁재산의 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
- 7. 수탁자 상호 간,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
- 8.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의 취지 및 한도
-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1. 수탁자의 경력(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)을 기재한 서류
- 2.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후견 관련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
- 3.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납부・체납 관련 서류 및 수탁자의 조세납부・체납 관련 서류
- 4. 신탁계약서(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그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될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포함한다)
- 5. 신탁재산의 종류·수량·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(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,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로부터 추가로 위탁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제 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위탁이나 기부를 받을 기간, 신탁재산이나 기부받을 금품의 종류 및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)
- 6. 부동산·예금·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·금융회사 등의 증명서(신청 당시 위탁받은 신탁재산만 해당한다)
- 7.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(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)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 예산서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8. 신탁관리인의 경력(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)을 기재한 서류 및 선임승낙서
- 9. 공익신탁의 운영,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의 지정 등을 위하여 공익신탁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성명·주소·경력
- 10.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・사용 계획서 11.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・인가・지정・등록・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
- **제4조(특수한 관계의 범위)** ① 법 제4조제4호에서 "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"란 수 탁자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수탁자를 말한다.
  - 1. 채권ㆍ채무관계에 있는 자
  - 2. 고용관계에 있는 자
  - 3.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
  - ② 법 제4조제5호에서 "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"란 신탁관리인 중 어느한 명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다른 신탁관리인을 말한다.
  - 1. 신탁관리인이 개인인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- 가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나. 6촌 이내의 혈족
    - 다. 4촌 이내의 인척
    - 라. 친생자(親生子)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(親養子)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・직계비속
    - 마. 신탁관리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
    - 바. 신탁관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
  - 2. 신탁관리인이 법인인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- 가. 신탁관리인의 이사 · 집행임원 · 감사
    - 나. 신탁관리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이사·집행임원·감사
  - ③ 법 제4조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"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"신탁관리인"은 "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"로 본다.
  - ④ 법 제4조제8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.
  - 1. 신탁 관계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- 가. 신탁재산관리인
    - 나. 위탁자 · 수탁자 · 신탁관리인 · 사용인 · 신탁재산관리인의 채권자
  - 2. 법 제4조제8호가목에 따른 신탁 관계자의 특수관계인: 신탁 관계자(위탁자·수탁자·신탁관리인·사용인 또는 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.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"신탁관리인"은 "신탁 관계자"로 본다.
- 제5조(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·변경 절차)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인가 여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②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가에 붙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 관에게 인가 조건 취소·변경 신청서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**제6조(변경인가 절차)**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변경하려는 이유
-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1. 신탁계약이 변경되는 경우: 변경되는 신탁계약서(신탁계약서에 변경취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신탁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)
- 2.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: 변경되는 사업의 개시예정일 및 변경사업 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(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)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 예산서
- 3.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
  - 가.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・주민등록번호・주소・경력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・법인등록번호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・주소, 정관 및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)을 기재한 서류
  - 나.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, 후견 관련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및 조세납부·체납 관련 서류(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다. 수탁자 상호 간,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
- 4.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
  - 가. 변경되는 재원 조달 방법을 소명하는 서류
  - 나. 기부금품과 관련하여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기부금품모집 사용 계획서
- 5.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:「신탁법」제114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소명하는 서류
- 6.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・인가・지정・등록・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: 그 처분서 사본
- **제7조(변경신고 사항)**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"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  - 1. 공익신탁의 명칭
  - 2. 위탁자
  - 3.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
  - 4.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
  - ②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명칭 변경을 이유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과 관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신탁재산의 운용)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(이하 "공익사업등"이라 한다)의 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위탁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
  - 2.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
  - ② 법 제11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신탁재산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**제9조(운용소득의 산정방법)**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에 관하여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 38조제5항을 준용한다.
- **제10조(신탁사무의 위임)**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.
  - 1. 공익사업에 따라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에게 기부금품을 지급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사무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그 밖에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탁사무로서 위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무
- 제11조(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)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  - 1.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  - 2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  -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  - 1.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  - 2.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  - 3.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(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)
  - 4. 신탁재산 운용명세서
  - 5. 신탁재산 사용점검표
  - 6. 공익사업 세부명세서
  - 7. 기부금품 사용명세서

제12조(외부감사 기준) 법 제17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100억원을 말한다.

- **제13조(합병인가 절차 등)**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합병할 각 신탁의 명칭(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신탁사무처리지와 합병 후 신탁의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
  - 2.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공익사업등의 내용(합병으로 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)
  - 3.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・주민등록번호・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, 법인등록번호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・주소)
  - 4. 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・주민등록번호・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, 법인등록번호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・주소)
  - 5.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신탁관리인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, 법인등록번호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주소)
  - 6.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신탁재산 총액 및 한도
  - 7. 신탁합병의 이유 및 합병계약일
  -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- 1. 신탁합병계약서
  - 2.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재산목록
  - 3. 합병 후 신탁의 재산목록
  - 4. 부동산・예금・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・금융회사 등의 증명서
  - 5. 합병 후 신탁의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(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)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 예산서. 다만, 합병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변동가액이 기존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- 6. 수탁자 상호 간,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
  - 7. 합병 후 신탁에서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·사용 계획서

-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이 영 제5조를 준용한다.
- **제14조(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)**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관수탁관리인(이하 "보관수탁관리인"이라 한다)에는 법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  - ② 법무부장관은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- ③ 보관수탁관리인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.
  - ④ 보관수탁관리인이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⑤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선임된 보관수탁관리인에게 신탁재산으로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 - 1. 법 제3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인가에 관한 사무
  - 2. 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 조건의 부과 취소 변경에 관한 사무
  - 3. 법 제7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
  - 4.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
  - 5.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
  - 6.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사무
  - 7. 법 제11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 감독에 관한 사무
  - 8.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
  - 9. 법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
  - 10.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
  - 11. 법 제23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종료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
  - 12.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무
  - 13.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무
  - 14.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감독에 관한 사무
  - 15.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탁사무의 위임 승인에 관한 사무

제1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17조(서식) 법무부장관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.

[별표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